

[사건명] 행심 2014-4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1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서면사과』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청구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3년도에 1학년 2반으로 청구와 ○○○과 같은 반이었다.
- 나. 2013. 9. 27. 2교시 기술·가정 수업에서 ‘도형은 시계 방향으로 그려 나간다’는 내용을 학습하던 중 ○○○이 시계·반시계 방향을 잘못 발표하자 이에 대해 청구인은 ○○○에게 “미국 시계는 그렇게 도 냐?”라고 말하였고, 이를 듣고 화가 난 ○○○이 청구인에게 욕을 하 고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 다. 2교시 종료 후 청구인은 쉬는 시간을 보내고 수업시간에 교실에 입 실한 후 청구인의 필통이 파손 되고 학용품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이 한 행동으로 생각하였다.
- 라. 3교시 종료 후 청구인과 ○○○은 필통 문제를 두고 말다툼 하다가 청구인은 ○○○의 옷깃을 잡았고, ○○○은 이를 뿌리치며 청구인의 얼굴을 때렸으며, 얼굴을 가격당한 청구인은 ○○○의 얼굴을 때

렸다. 위 사건으로 청구인은 코뼈골절과 찢김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3. 10. 10.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

- 마. 2013. 10. 24.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한다)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사과(제1호)를, ○○○에 대하여는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 5일 및 특별교육 5일(학생 및 학부모)을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다.
- 바. 피청구인은 2013. 11. 1.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사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에 대하여 ‘사회봉사 5일 및 특별교육 5일’의 처분을 하였다.
- 사. 2013. 11. 0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및 재심 안내 통지서를 청구인이 송달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7조, 제22조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8조 제16조

나. 청구인의 주장

- 1) 청구인이 수업시간에 “미국시계는 그렇게 도냐?”라고 말한 것은 싸움의 발단이 될 정도의 감정이 있는 말이 아니고 평소 학생들 사이에서 하는 평범한 말로 언어폭력이 아니며, ○○○이 청구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기 전에 청구인이 ○○○과 화해하려고 ○○○의 어깨에 손을 댄 것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다.
- 2) 청구인이 코뼈골절과 얼굴 찢김 상해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만

큼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확실한 데도 사건 발생 한 달 여 동안 학교 스스로 조치를 취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 3)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의 보호자와 청구인의 보호자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쌍방과실로 추론된다고 말하여, 오히려 ○○○은 쌍방과실이라 말하고 다니며 폭행을 하고서도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으며, ○○○의 보호자가 이 사건을 절대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를 지켜보는 피청구인 측은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 4) 피청구인은 강압적인 태도로 청구인에게 점심시간, 국어시간, 기술·가정시간에 불러내어 진술서를 반성문 쓰듯이 작성하라고 하여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였다.
- 5) 자치위원회에서는 교감, 학생부장, 경찰 위원은 강압적이고 반복되는 질문과 유도심문으로 청구인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유도하였다.
- 6) 청구인은 2013. 10. 24. 개최하는 자치위원회의 참석 서면 통지를 2013. 10. 28. 수령하였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열람만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13. 11. 8. 다시 청구하여 2013. 11. 18. 회의록을 복사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자치위원회 결과 및 재심 안내 통지서를 자치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10여일이 지난 후인 2013. 11. 5. 수령하였다.
-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장은 공제회 보상은 절대 안 된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측이 피청구인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 8) 피청구인은 청구 외 ○○○이 평소 미국생활에 대하여 열등감이 있었고, 이로 인해 수업시간 중 시계가 거꾸로 간다는 말을 한 청구인의 말이 언어폭력이라고 주장하지만, ○○○은 미국친구들과 페이스북도 하고,

전교생이 미국서 유학하고 온 재벌 2세로 생각할 정도로 자랑하고 다녔으며, 청구인 역시 ○○○이 미국생활을 자랑스러워했다고 알고 있었을 뿐이다.

다. 피청구인의 주장

- 1) 청구인이 말한 “미국시계는 그렇게 도냐?”라는 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학교폭력’ 중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미국 생활에 대하여 열등감을 지니고 있고 이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을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길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음에도 교실 내 학생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말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언어폭력을 한 사실이 있는 것이다.
- 2) 청구인과 ○○○의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에 의하면 상호 시비로 청구인과 ○○○ 모두 폭력을 행사하였고 공격과 방어가 교차되었기에 청구인을加해자이자 피해자라고 본 것이다. 다만 객관적인 피해 정도에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양자의 폭력상황을 상이하게 진술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3) 그러나 청구인의 언어폭력이 존재한 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청구가 모두 기각 된 점, 청구인의 진술 내용이 번복 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상호간의 폭력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 수준의 입증이 어려운 점, 경찰에서 ○○○과 청구인을 각 상해와 폭행의견으로 소년부에 송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한 것이다.
- 4)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먼저 안내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서류 및 입장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여, 청구인은 직접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므로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의 통지도 자치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14일을 넘기지 않았으며,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10일의 기한을 넘기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 청구인은 이 사건 위원회 개최 전부터 학생부장이 학교안전공제회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기에, 상대방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치료비 미지급을 방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는 공제급여가 아닌 구상권청구를 하여야 치료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선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절차에서는 치료비 전액 혹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달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하여 치료비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에 대한 것이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인 학교안전공제회 관련으로 처분의 부당함을 논의하는 것은 관련성이 없다.

라. 판단

- 1)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진술서 및 청구인이 자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수업시간에 청구인이 ‘미국에서는 시계가 그렇게 도냐’라고 말한 사실, ○○○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 ○○○이 때리자 청구인의 안경이 벗겨지고 피가 나며 청구인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 팔을 휘둘러 ○○○이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학교폭력사건 조사 개요서에 의하면 ○○○은 미국 유학에 대하여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으며 미국생활에 대한 말에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이 시계·반 시계 방향을 잘못 이해하여 발표를 한 상태에서 반 아이들이 모두

있는 수업시간에 청구인이 ‘미국에서는 시계가 그렇게 도냐’는 말을 한 것으로 이는 모욕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과 ○○○ 및 다른 학생들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 어깨를 잡은 사실과 ○○○에게 얼굴을 맞은 후 ○○○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폭행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것이 화해를 위한 행위이고, ○○○에게 얼굴을 맞은 후 방어차원에서 팔을 휘두른 것을 ○○○이 맞은 것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한 ‘미국에서는 시계가 그렇게 도냐’는 말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2)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여러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청구인의 부모에게 유선으로 자치위원회 개최 사실 및 참석요청, 서면진술서와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2013. 10. 24. 개최된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였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동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 10. 24. 자치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인 2013.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및 재심 안내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2013. 11. 5.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학교안전공제회 및 분쟁조정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3. 결어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